

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620호 2010. 2. 1. (월)

고 시

- 고시 제2010-9호 [하천 점용 허가 고시] 2

공 고

- 공고 제2010-84호 [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3
- 공고 제2010-87호 [공인등록공고]..... 4
- 공고 제2010-88호 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..... 5

【 안 내 문 】

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

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·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년 2월 1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성 명	울산광역시 복구청장(농수산과장)		
주 소	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1004-1		
점용위치	◦울산광역시 복구 구유동 648-1번지	하 천 명	정자천(지방하천)
점용목적	정자항 홍보아치 설치	점용면적	60㎡
점용기간	영구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0 - 84 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2 월 1 일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(법률 제9924호, 2010. 1. 1 공포 · 시행)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」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를 “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”로 개정함(안 제97조)
- 나. “제4절 사업소세”를 삭제 (안 제106조에서 제108조)
- 다.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 규정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함.

(안 제109조에서 제11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세과(전화 052) 219-7273, 7263. FAX 052) 219-727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주소 및 전화번호

공 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」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「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2월 1일

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-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가능일 : 2010년 2월 1일
-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

전자이미지 공인명	규격(cm)	서 체	인 영
울산광역시복구청장인	2 × 2	한글전서체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- 88 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2월 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(법률 제9924호, 2010. 1. 1 공포·시행)으로 인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,
-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 중 종전의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신설된 세목명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개정내용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 중 “주민세”를 “지방소득세”로, “재산할 사업소세”를 “주민세 재산분”으로, “종업원할 사업소세”를 “지방소득세 종업원분”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함.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(전화:219-7266, 팩스:219-727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주소 및 전화번호